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 박완수·정점식·윤한홍

최형두・강기윤・조해진

이달곤 • 윤영석 • 구자근

정경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역은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춘천, 청주 등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 도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당시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지정해제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창원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환상형(環狀形)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물리적으로 도시의 확장에 제약이 있고 기계·조선사업의 쇠퇴 등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 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해제기준과 관련된 하위법령의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등"을 "및 해제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하려는 경우"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고려하여야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조속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그 조정 및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 도시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된 지역
-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u>등</u>)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① (생 략)		<u>해제의 기준 등</u>) ①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
		<u>로 한다.</u>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
		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
		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
		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u>있는 지역</u>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u> <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조속한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그조정 및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 도시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된 지역
-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

 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하려는 경우

-----<u>고려하</u> 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